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소휴직명령 심의를 위한 휴직심의위원회 신설〉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11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7
1. 최근 5년간 각 군 기소휴직 인원 현황	7
2. 해군 및 해병대, 공군 기소휴직 심의위원회 개최건수	7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2. 9.
- 3) 회 부 일 : 2025. 1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휴직 여부가 결정되어 휴직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후단 및 제9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형사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군인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기소휴직을 명령하는 경우에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후단 및 제9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휴직) ① (생략)	제48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 ----- ----- ----- ----- ----- ----- ----- ----- ----- . 이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에는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⑧ (생략) <신설>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2항 후단에 따른 휴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교·준사관·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일정 기간 휴직을 명하는 것을 ‘기소휴직’이라 함.¹⁾

기소휴직제도를 둔 취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공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무나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인 군인에게도 공무담당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소송당사자로서 공판과정에서의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임²⁾.

□ 현행 법령은 기소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³⁾ 이는 사후적 구제를 위한 규정에 불과함. 실제로 기소휴직처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봉급의 50%만 지급받게 되어⁴⁾, 기소휴직기간 중 급여가 즉시 감액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함.

□ 또한 기소된 군인에 대한 기소휴직처분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나⁵⁾, 재량행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처분의 형평성이

1) 기소휴직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 및 강학상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2) 「군인사법」, 임천영, 법률문화원, pp.863-864.

3) 「군인사법」 제48조(휴직) ⑤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4) 「군인사법」 제48조(휴직)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고, 제3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되어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차액(差額)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2. 제1항제2호(공무수행 중 행방불명되어 휴직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 봉급의 100분의 50

5) 최초 구 「군인사법(1994.12.31. 법률제4839호로 개정되기 이전)」 하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는 당연휴직토록 운영되었다가, 1994.12.31.자 개정 법률에서 ‘장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용권자에게 재량이 부여되었고, 이후 2014.1.14.자 개정 법률 제12231호부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용권자와 기소된 군인 간의 개인적 관계 등이 고려되는 등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기소휴직을 명하려는 경우, 개정안과 같이 휴직심의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기소휴직 대상 군인에게 즉시 발생하는 급여 감액 등 불이익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제도⁶⁾를 보완함으로써 처분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보임.

□ 또한 해군과 공군은 불구속기소된 군인에 대한 기소휴직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자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현재 일부 군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여 전 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군종(軍種) 간 인사 처분 기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사관리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해군규정 2-1-1-규04(해군 현역복무 규정) 제27조 ① 참모총장은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통보된 사람에 대해 기소휴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소휴직 여부를 결정한다. 단, 구속기소된 사람은 직무수행이 불가하므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당연 기소휴직 처분한다.

6)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22조(의견청취)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군규정 2-21(장병 인사관리) 제137조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 외)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정식기소라 할지라도 구속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공본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소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구속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에 의한 휴직 명령에는 모두 심의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됨.

하지만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물리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기소휴직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임.

따라서 구속기소된 군인을 제외하고 불구속기소된 군인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휴직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물리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구속기소된 군인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만 휴직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각 군 기소휴직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837	218	194	156	134	135
육 군	426	149	95	63	63	56
해 군	138	31	43	22	22	20
공 군	201	25	46	53	29	48
해 병	72	13	10	18	20	11

2. 최근 5년간 해군 및 해병대, 공군 기소휴직 심의위원회 개최건수

(단위: 명)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470	48	87	122	97	116
해 군	236	40	53	47	45	51
공 군	185	8	34	57	32	54
해 병	49	기소휴직 심의 규정이 마련 되지 않아 직권으로 실시		18	20	11

자료: 국방부